

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
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
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
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출생아 통계에서
서울시는 전국 17개 시·도 중 가장 적은 0.59명이란 충격적 수치를
기록하였습니다. 많은 정책과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기조를
반전시키지 못한 것은 시민 다수가 시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
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할 것입니다.

-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서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더욱 노력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느끼는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입니다.

- 미래세대가 일·생활 균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틈없는 교육 및 보육, 촘촘한 의료, 복지체계 구축 등 필요한,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-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,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으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규정(안 제5조제2호)을 추가하고 양육·보육·교육 등의 지원 규정(안 제5조제3호), 보건·의료, 복지, 교통 등의 비용 지원 규정(안 제5조제4호),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규정(안 제5조제5호) 등을 신설하는 안입니다.

-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,
개정안의 취지를 살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- 감사합니다.